

붙임3 : 우대사항 적용 관련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보훈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 구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름
이전지역 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학력을 기준(대학원 이상 제외)으로 광주·전남지역의 대학 또는 광주·전남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붙임4 참조)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 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최종합격예정자 대상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비수도권 지역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학력을 기준(대학원 이상 제외)으로 서울, 경기, 인천, 해외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붙임4 참조)
저소득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부여
북한이탈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로서 북한 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자립 준비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부여 ▪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부여
경력단절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라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에 해당하는 자에 부여 (여성으로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존재하고 서류 접수 마감일 까지 계속하여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전력거래소 인턴 경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거래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인턴을 수료하였거나, 전력거래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인턴으로 4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다음에 따라 서류전형 면제. 단, 채용 지원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1.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인턴수료일(근무종료일)이 최근 3년 이내인 자 또는 현재 근무 중인 자 2. 서류 면제는 1회에 한하여 인정(전력거래소 채용에 지원하여 동일 인턴 경험으로 서류전형 면제 우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인정 불가) 3. 단, 2019년 또는 2020년 장애인 체험형 인턴의 경우, 인턴을 수료하였거나 4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시, 서류전형 면제를 적용
인재양성형 재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가산점 부여 1. 인재양성형 전형으로 전력거래소에 입사한 자 2. 지원서 마감일 기준 전력거래소에 재직중인 자 3. 지원서 마감일 기준 학사학위 보유자 4. 신입직(대졸수준) 채용에 지원한 자

붙임4 :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 학교의 범위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이전지역 인재의 정의>

- (비수도권 지역인재)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이전지역 인재) 최종학력을 기준(대학원 이상 제외)으로 광주·전남지역의 대학 또는 광주·전남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인 경우 2년=4학기) 이상 등록하고, 최종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최종합격예정자 대상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 대학알리미(<http://academyinfo.go.kr>)를 통해 본인 대학의 구분(본교, 분교, 제2캠퍼스) 및 지역 등 확인 가능

< 비수도권 지방학교 >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예시)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예시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함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가 아님

-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다.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이전 지역 학교 >

가. 이전지역 학교

□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본교
- (2)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 (3)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나. 이전지역 학교 제외 대상

- (1)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
 -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2)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

다. 그 외의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1)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 (2)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예 시 >

<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 대학 졸업: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예정): 해당

<본교의 위치와 분교·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

-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
-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

*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
본교 학생은 부산,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비해당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비해당
- 이전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비해당

<대학중퇴 후 다른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비해당
-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비해당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해당
-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비해당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 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해당
-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비해당